

# 2025년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교육 및 사업설명회

(북부권) 2025. 3. 21.(금) 13:00~15:00  
충주시청 남한강실  
(중남부권) 2025. 3. 25.(화) 10:30~12:30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

## 교육 안내

### 》 추진목적

-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사항과 충청북도 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내용 등을 안내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사업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 안내사항

- 교육일시 [북부권] 2025. 3. 21.(금) 13:00~15:00 / [중·남부권] 2025. 3. 25.(화) 10:30~12:30
- 교육과정: 공통-기본교육 / 2시간 인정
- 이수증 발급 안내
  - 80% 이상 참석 확인 시 이수증 발급(부분 이수 불가)
  - 교육 이수 후 만족도조사 참여
    - 교육 종료 후 QR코드를 통해 설문 조사(개인별 응답)

## 주요 내용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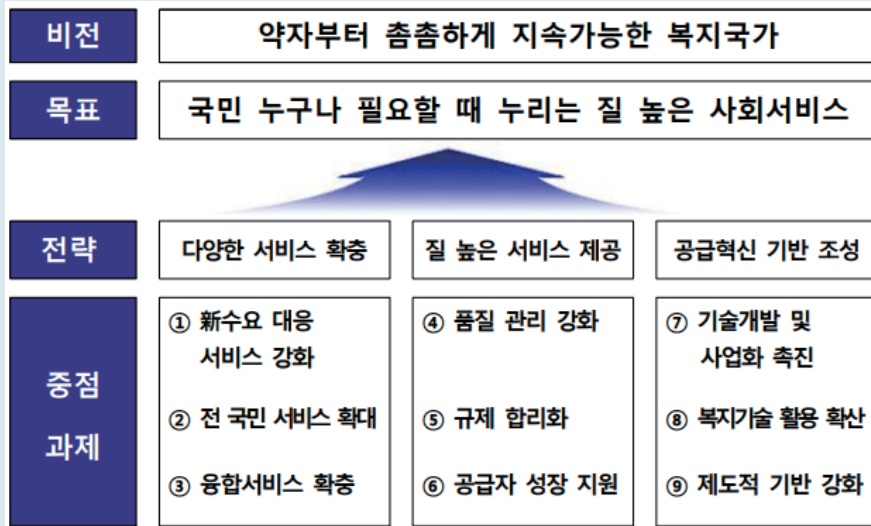
- 01 ' 25년 충청북도 사업추진 방향
- 02 ' 25년 보건복지부 [지투]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 03 ' 25년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04 ' 24년 충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연구 결과 공유
- 05 ' 25년 연간 교육 추진계획 등 협조사항
- 06 ' 25년 보건복지부 [일상]사업지침 주요 개정사항

' 25년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01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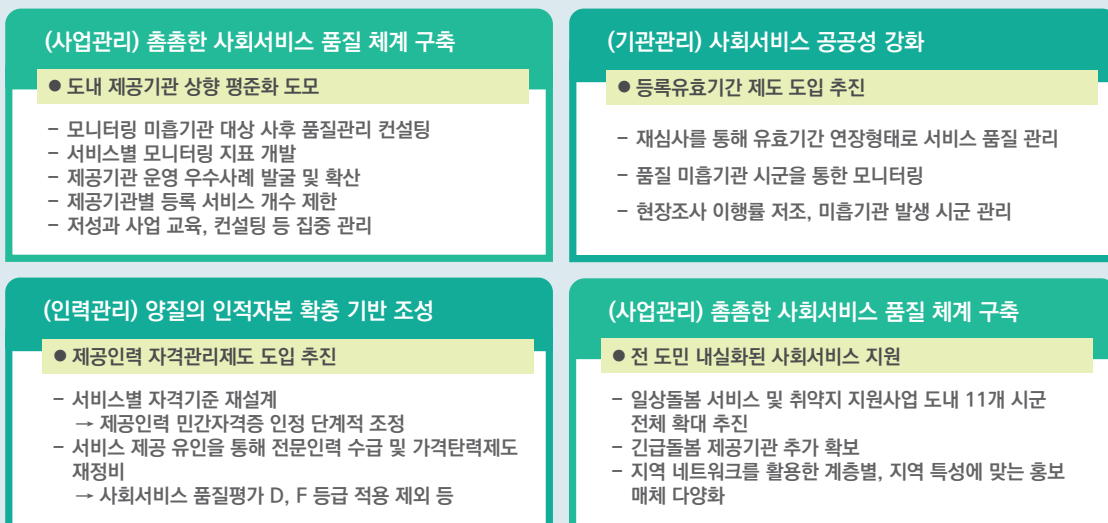
### 보건의복지부,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 (2024~2028)



5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좋은 충북 지역사회서비스 (2025년~)



6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 충청북도 자체 지침('24년부터 변경 적용)

### / 기관 등록(신규, 서비스 추가, 휴·폐업) 관리

-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 시 사전등록 컨설팅 이수 의무
  - ※ 예외사항 ① 시군을 달리한 주소지 이전으로 등록증 재발급 대상 기관
  - ② 지위승계로 변경된 대표자가 당해연도 지침교육 및 기본교육 이수자인 경우
- 시도개발 사업이라도 **기관방문형 사업인 경우, 관내 시·군에 기준등록지를 마련**하여야 함('20년 신규등록기관부터 적용)
  - ※ (추가확보시설도 동일) 추가확보시설은 지자체 소관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등록기준 공고 확인
- [신설] **기존기관이 서비스 추가등록시, 시·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제공기관 사업평가\* 후 서비스 추가등록 여부 결정**
  - \* 사업평가 결과, 최근 2년 이내 현장조사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 충북형 품질 관리제도 모니터링 미흡기관(60점 미만), 서비스 품질 평가 D, F등급 기관은 **추가등록 제한**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과징금 등)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2년 내 신규서비스 **등록 제한**
  - 서비스 구조조정\*\* 대상 서비스의 경우 **추가등록 불가**
    - \*\* 서비스 효과성 평가, 이용자 모니터링 조사 결과, 성과평가 연구 분석 등에 기반하여 효과가 미미하다고 충청북도가 권고하거나 시군이 판단한 사업
- [신설] **최근 2년간(휴업기간 포함) 서비스 제공 및 실적이 없는 제공기관은 해당 서비스 폐업 조치**
  - \* 예) 제공기관이 등록한 서비스 중에 실적이 없는 서비스만 폐업
- [신설] **제공기관이 휴·폐업 신고 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장조사 미 실시 제공기관일 경우 해당 시·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관자료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 확인 후 휴·폐업 절차 시행**

7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 충청북도 자체 지침

### / 충청북도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

\*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은 2025년부터 적용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아동청소년역사탐험프로젝트
부모- 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키즈드림성장프로그램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사업

※ 영양원 입소자 및 병원입원자 등은 서비스 이용 제한

8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 충청북도 자체 지침('24년부터 변경 적용)

## / 제공인력 관리\_1

- **제공인력 입·퇴사 발생 시** 제공기관에서는 '**제공인력 입·퇴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고 후, 승인 받은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 **[신설] 슈퍼바이저 승인·관리 절차(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①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지정 현황 및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 > ② (시군) 제출 서류 검토\*\* 후 충청북도와 제공기관에 공문으로 통보 > ③ (시군) 등록 이후 현장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등록 슈퍼바이저를 지속 관리

\*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 서류 등 슈퍼바이저 기준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경력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식적인 문서)

\*\* 시군 검토사항: **상근근무(전일제) 여부와** 슈퍼바이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신설] 슈퍼바이저 승인·관리 절차(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지정 현황 보고 서식**

제공기관명	제공서비스	슈퍼바이저	상근여부	자격
지투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김지투	여, 부	심리 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실무경력 7년 이상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인원은 해당 서비스 등록 제공인력의 50% 이상을 넘을 수 없음

9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 충청북도 자체 지침('24년부터 변경 적용)

## / 제공인력 관리\_2

- **[신설] 슈퍼바이저 승인·관리 절차(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가격탄력제도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시군에 사전 보고**하여야 함

> 가격탄력제도 제공 보고 서식: 슈퍼바이저 지정 현황 보고 서식과 동시 제출

제공기관명	제공서비스	슈퍼바이저	가격탄력제도 적용 이용자명	제공기간	본인부담금(월)
지투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김지투	이심리	2024.1.1.~ 1.31.	00,000원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인원은 해당 서비스 등록 제공인력의 50% 이상을 넘을 수 없음

10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충청북도 자체 지침('24년부터 변경 적용)

### / 서비스 제공 관리

- (보강계획 수립) 기존에 계획한 요일을 피해서 보강 시행
  - ※ 하루에 정상결제 1회 + 보강결제 1회 **불가능**
- (제공기록지) **제공인력이 수기로 작성**
  - ※ 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 내용, 제공일자 및 시간, 제공 장소,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서명 등 필수 사항이 모두 작성되어야 함
  - ※ 청주시 제공기관은 청주시 자체 양식(제공기록지) 활용
- **이용자가 무단(결석, 당일 직전 취소)으로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설]** 미환급 사유를 서비스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란에 기재하고 이용자 서명 확인
    - ※ 단, 이용자의 무단결석이라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이므로 정부지원금바우처 결제 **불가**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 운행이 필요할 시**, 차량운행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차량보험(영업용 또는 업무용)가입 > '차량운행신고서'(충북도 서식) 작성 후, 등록 **시군에 사전 신고** > '차량운행 일지' 작성 및 관리

11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충청북도 자체 지침

### / 충북도 자체 공통 서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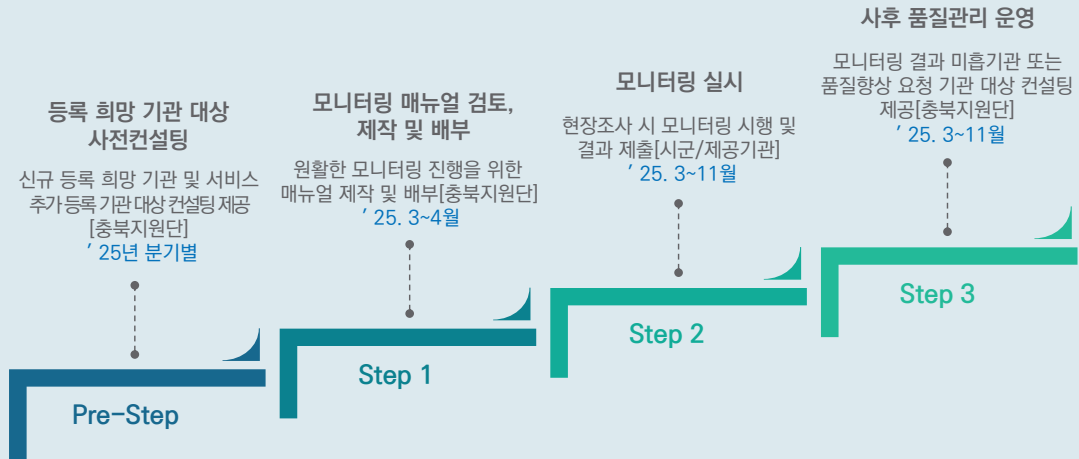
서식명	활용 안내
회기별 서비스프로그램 개요서	[시군 제출] 제공기관 등록(서비스 추가) 시 활용 [기관 관리]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 안내 시 활용
제공인력 입·퇴사신고서	[시군 제출] 제공인력 입·퇴사 발생 시 활용
현장조사 자체점검표	[시군 제출] 현장조사 전 자체점검 시 활용
차량운행신고서, 차량운행 일지	[시군 제출] 차량운행 신고 시 활용 [기관 관리] 차량운행 관리에 활용
윤리행동강령	[시군 제출] 차량운행 신고 시 활용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기관 관리]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계약체결 시 활용

12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 충청북도 자체 지침

## / 충북형 품질관리제도 운영

- 제도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



13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 / 충북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성과관리 체계(안)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운영 책임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와 지역사회 변화를 견인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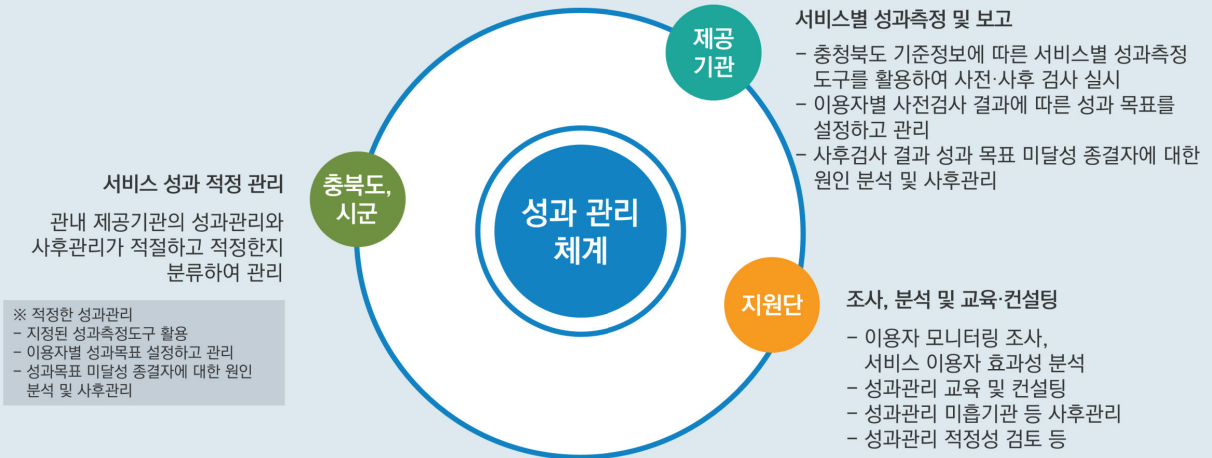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 주체	주요 내용
제공기관	① 충청북도 기준정보에 따른 서비스별 성과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실시 ② 이용자별 사전검사 결과에 따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③ 사후검사 결과 성과 목표 미달성 종결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b>사후관리</b> ※ (사후관리) 이용기간 종료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는 해당 제공기관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시·군 복지지원 분포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종결 대상자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
충청북도 & 시·군 & 지원단	④ 제공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성과관리 자료를 제출 받아 성과관리와 사후관리가 적절하고 적정인지 분류하여 관리 ※ (미흡기관 관리) 성과관리 적정(지정된 성과측정도구 활용, 이용자별 성과목표 설정하고 관리, 성과목표 미달성 종결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사후관리 등) 기관이 아닌 제공기관 대상 교육과 컨설팅 진행 ⑤ 성과관리 적정성 검토: 성과 목표 및 척도 적정성 등 검토 후 조정

14

# 충청북도 사업 추진 방향

## / 충북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성과관리 체계(안)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02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바우처 사용 중지 사유 및 결제 가능기간

사업지침 p.21

#### 중지사유: (신설) 자격정지

중지사유	요건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사망·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판정결과 (등급 외)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사용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교정시설 입소자	대상자의 교정시설 입소	교정시설 입소자로 중지전송된 일자 기준 중지 처리
<b>자격정지</b>	<b>관계 법령에 의거 바우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b>	<b>자격정지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b>

17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표준모델\_07

사업지침 p.76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신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충청북도 기준정보 회당 시간과 다름에 유의

항목	내용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종략 -</p> <p>* 회당 60분의 서비스 시간 내에서, 5분 상담, 45분 수기요법, 10분 비(非)수기요법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 제공</p> <p>- (상담) 서비스 대상자 상태 확인 및 서비스 주의사항 안내 등을 실시하고, 별도의 상담 일지 작성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님</p> <p>- (비수기요법 예시) 적외선치료기, 전기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자기장치료기 등 전기기구의 사용 및 찜질 등의 온열치료요법</p>

< 참고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 >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18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서비스 이용 제한\_1

사업지침 p.98

#### ▪ 서비스 이용 제한: 유사 중복사업 (신설) 추가

2.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아래 사업은 동일기간 내 중복수혜 불가

- 분류 1: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 분류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달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분류 3: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 계층 운동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19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서비스 이용 제한\_2

사업지침 p.98

#### ▪ 이용자의 준수사항 추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해서는 안됨
2.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됨
3.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4.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20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서비스 이용 제한\_3

사업지침 p.99

#### ▪ 이용자 취소 및 제한기준 신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 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제15조 위반행위 중 성희롱의 경우 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자체가 자체 위원회\* 운영**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위원회구성안 예시: 제공기관장, 지자체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3-7인으로 구성되 제공기관장, 지자체 공무원은 필수 참석대상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공자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참고] 이용권 취소 및 제한 처리방법: 추후 이용권 제한 자동처리를 위한 시스템(행복이음 업무처리기능) 개발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21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서비스 종료

사업지침 p.110

- 종료 절차 » 서비스 종료 안내문 (예시) 제8호(행복이음을 통해 출력 가능)  
→ 서비스 종료 안내문(예시) 제9호 서식 삭제로 인해 관련 서식 번호 변경

### 제공기관 등록 » 시설·장비기준

사업지침 p.115

-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개정 2025.1.2.>
- 시설·장비기준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2제1호가목에 따라 (삭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참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1. 공통 시설기준 →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2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제공기관 등록 »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사업지침 p.116

-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개정 2025.1.2.>
- 시설·장비기준 »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삭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제공기관 등록 » 등록 접수 및 심사

사업지침 p.121

- 인력 배치기준 (신설)
  - **관리책임자는 제공기관장을 보좌하여 제공인력 관리, 각종 행정·회계업무 등을 수행함**

23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제공인력 관리 » 결격사유 (신설)

사업지침 p.140

- 제공인력 결격사유 (신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으로 등록 불가
    - ① 피성년후견인
    -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⑤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⑥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4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제공인력 관리 » 결격사유 (신설)

사업지침 p.140

#### ▪ 제23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 (자격정지 처분 사유) ①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 ②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5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제공인력 관리 » 결격사유 조회 방법\_1

사업지침 p.140

- (결격사유 확인의 주체) 제공기관의 장
- (결격사유 확인 방법)
  - 피성년 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선고 사실
    - ※ 지자체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회보 결과를 활용하거나 채용하려는 인력이 제출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가정법원)로 확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
    - ※ 마약류 중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 활용 가능

#### 건강진단서 (예시)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26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제공인력 관리 » 결격사유 조회 방법\_2

사업지침 p.140

#### ▪ (결격사유 확인 방법)

-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자체에 요청하여 확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범죄경력 확인절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로 확인

####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 ① (제공기관) 제공인력 본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별지 제5호의 3서식, 지침 제18호서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등 징구
  - ② (제공기관의 장)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별지 제5호의 2서식, 지침 제17호서식]에 따라 조회를 요청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 (<http://crims.police.go.kr>)
  - ③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조회를 요청받은 대상자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제공기관 장에게 회신[별지 제5호의 4서식, 지침 제19호서식]

27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제공인력 관리 » 결격사유 조회 방법\_3

사업지침 p.142

#### 〈참고〉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이용방법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접속(<http://crims.police.go.kr>))

**[제공기관]** 시설(기관) 정보등록 시,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시설(기관)장 정보관리' 클릭

- 1)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에 시설(기관) 정보등록시 관련법령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클릭
- 2) 증빙자료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미지로 스캔하여 첨부
-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검증번호를 직접 만들어서 등록 필요

\* 취업예정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한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알려주어야, 범죄경력조회 시스템 통해 발급동의를 받을 수 있음

**[취업예정자]**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달받은 시설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 메인 화면에 알림 마당(자료실)에서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매뉴얼(7p)에서 확인 가능  
제공기관의 장은 인력 채용 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

28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제공인력 관리 》 제공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_1

사업지침 p.142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신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1.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9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제공인력 관리 》 제공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_2

사업지침 p.142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신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정지하는 경우 행위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등의 기준은 지침(p.143)참고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제공인력 이력 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이 확인된 제공인력에 대해 그 처분결과 등을 지체없이 시스템으로 입력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원은 자격취소 후 취소처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처리

30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제공인력 관리 》 제공인력교육과 훈련

사업지침 p.144~146

- (목적)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지원,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통한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 (교육시간) 당해연도 기준 8시간 ※ 자세한 내용은 지원단 연간교육 계획 발표 자료 참고
    - 교육 구분에 따라 공통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이수
    - 신규 제공인력(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의 당해연도 내 공통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12시간 이수
- ※단,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이 하반기(7월~12월)인 입사자는 당해연도 내 공통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참고〉 신규 제공인력 교육이수 예시

- ✓ 상반기 서비스 제공 신규인력 예시: 최초서비스 제공일이 1.1.~6.30.인 경우
  - 예) '25년 3월 3일에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자는 '25년 12월까지 공통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12시간 교육 이수
- ✓ 하반기 서비스 제공 신규인력 예시: 최초서비스 제공일이 7.1.~12.31.인 경우
  - 예) '25년 10월 14일에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자는 '25년 12월까지 공통교육 4시간을 포함하여 총 8시간 교육 이수

31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현장조사 》 행정처분\_부당이득 징수\_1

사업지침 p.150~152

- (징수 요건) 법 제21조
  - 제공자(제공자였던 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징수 주체) 제공자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
- (징수 대상)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제공자였던 자), 제공인력, 이용자
- (징수 범위)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 ※ 단, 부당이득금 환수 시 서비스 단가에 포함된 본인부담금은 환수 후 이용자에게 환급
- (신설) 부당이득 가산 이자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금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
  - 부당이득금 이자 가산 방식: 지침 참고

32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현장조사 » 행정처분\_부당이득 징수\_2

사업지침 p.150~152

#### <참고>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징수
-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으로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의 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질문·검사하도록 할 수 있음
- ④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3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현장조사 » 법 위반사실의 공표\_1

사업지침 p.156~157

####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25조의2

- (처분 요건)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함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② 제20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③ 제공인력이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처분의 주체 및 범위

- (처분 주체) 제공자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
- (공표 내용) 위반행위, 처분 내용, 제공자의 이름(기관인 경우 기관의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모두 포함), 제공자의 주소(기관인 경우 기관의 주소), 그 밖에 다른 제공자와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4

## ' 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

### 현장조사 » 법 위반사실의 공표\_2

사업지침 p.156~157

#### ▪ 처분의 주체 및 범위

- (공표 방법)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날부터 6개월동안 게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부록. 서식

사업지침 p.173~277

※ 관련 서식 변경도 확인!!

35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03

#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충청북도 기준 정보 유의사항

### 기본 원칙

- 각 사업에 별도 해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통 지침 원칙
- 관련 법령, 지침, 기준 정보는 **개인 및 기관의 자의적 해석 금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경력은 '자격증 취득 후', '학위 취득 후'부터 인정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식으로 근로한 기간으로 해석, **자원봉사·인턴·실습 등 불인정**
- 본인이 충족한 **자격(자격증, 학위, 실무경력 등)**에 맞는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은 **등록 시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 실시간(회당) 결제로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 결제 원칙**
- 서비스 미제공에도 선결제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부정행위로 해당 금액 환수)
- 서비스별 목적이 다르므로 **2개 이상 서비스 혼합하여 집단 구성, 제공 불가**
- 이용자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검사 실시(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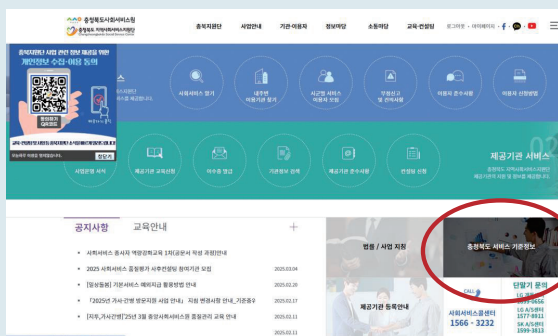
### 기본 서비스

- 기본서비스에 명시된 프로그램 반드시 제공
- 기본서비스에 명시된 **횟수와 회당 시간 반드시 준수** > 제공기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교과 과정, 과제, 시험 준비, 학습지 풀이 등 **서비스 목적과 관계 없는 프로그램 제공 불가**

#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충청북도 기준 정보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표준모델과 상이
  - “2025년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로 내용 확인
  - ※ 홈페이지 > 정보 > 자료실 > 2025년 충청북도 서비스 기준정보 다운로드 가능



### 자료실

전체	기타자료	법률	사업지침	지원단 발간물	사업운영 서식	충청북도 서비스 기준정보
<input type="text" value="검색내용"/>						
총 2건의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번호	구분	제목	파일	글쓴이	등록일	조회
25	충청북도 서비스 기준정보	2025년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파일]	관리자	2024.12.16	99

##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지투] 주요 변경사항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적용 대상: 적용시점 이후 선정된(신규/재판정) 이용자

서비스명	항목	기존	변경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중복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제한</li> <li>-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제한</li> <li>-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b>전국민마음투자사업</b></li> </ul>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서비스	중복제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제한</li> <li>- <b>전국민마음투자사업</b></li> </ul>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중복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제한</li> <li>- 정신건강도달케어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제한</li> <li>- 정신건강도달케어서비스, <b>전국민마음투자사업</b></li> </ul>

39

##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지투] 주요 변경사항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적용 대상: 적용시점 이후 선정된(신규/재판정) 이용자

서비스명	항목	기존	변경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li> <li>※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회로 한정... (생략)</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 이프코칭 리더십 진로 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학습모듈(초기 3개월)을 실시할 경우 주2회 (회당 90분)</td> <td>월3회 (주1회)</td> <td>120분</td> </tr> <tr> <td>부가 서비스</td> <td>체험학습프로그램 (생략)</td> <td>월1회</td> <td>360분</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 이프코칭 리더십 진로 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학습모듈(초기 3개월)을 실시할 경우 주2회 (회당 90분)	월3회 (주1회)	120분	부가 서비스	체험학습프로그램 (생략)	월1회	3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li> <li>※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b>연 4회(이상) 제공</b> ... (생략)</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본 서비스</td> <td>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 이프코칭 리더십 진로 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학습모듈(초기 3개월)을 실시할 경우 주2회 (회당 90분)</td> <td>월4회 (주1회)</td> <td>120분</td> </tr> <tr> <td>부가 서비스</td> <td>체험학습프로그램 ※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는 달은 교육프로그램 월 3회 (회당 120분)</td> <td>연 4회 이상</td> <td>360분</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 이프코칭 리더십 진로 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학습모듈(초기 3개월)을 실시할 경우 주2회 (회당 90분)	월4회 (주1회)	120분	부가 서비스	체험학습프로그램 ※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는 달은 교육프로그램 월 3회 (회당 120분)	연 4회 이상	36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 이프코칭 리더십 진로 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학습모듈(초기 3개월)을 실시할 경우 주2회 (회당 90분)	월3회 (주1회)	120분																								
부가 서비스	체험학습프로그램 (생략)	월1회	36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 이프코칭 리더십 진로 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학습모듈(초기 3개월)을 실시할 경우 주2회 (회당 90분)	월4회 (주1회)	120분																								
부가 서비스	체험학습프로그램 ※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는 달은 교육프로그램 월 3회 (회당 120분)	연 4회 이상	360분																								

40

##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지투] 주요 변경사항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적용 대상: 적용시점 이후 선정된(신규/재판정) 이용자

서비스명	항목	기존	변경																								
아동·청소년의 역사탐험 프로젝트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 본 서비스</td> <td>1. (생략)</td> <td rowspan="2">월3회</td> <td rowspan="2">120분</td> </tr> <tr> <td>2. (생략)</td> </tr> <tr> <td>3. 탐험활동 및 현장체험</td> <td>월1회</td> <td>480분</td> </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생략)	월3회	120분	2. (생략)	3. 탐험활동 및 현장체험	월1회	4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 본 서비스</td> <td>1. (생략)</td> <td rowspan="2">월3회</td> <td rowspan="2">120분</td> </tr> <tr> <td>2. (생략)</td> </tr> <tr> <td>3. 탐험활동 및 현장체험</td> <td>월1회</td> <td>최소 240분 최대 480분</td> </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생략)	월3회	120분	2. (생략)	3. 탐험활동 및 현장체험	월1회	최소 240분 최대 48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생략)	월3회	120분																								
	2. (생략)																										
	3. 탐험활동 및 현장체험	월1회	48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생략)	월3회	120분																								
	2. (생략)																										
	3. 탐험활동 및 현장체험	월1회	최소 240분 최대 480분																								

41

##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지투] 주요 변경사항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적용 대상: 적용시점 이후 선정된(신규/재판정) 이용자

서비스명	항목	기존	변경
몸 튼튼 슈퍼키즈 승마서비스	효과성 검증 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 (생략)</li> <li>(필수) 신체 발달 및 체력측정, 사회성 발달 측정</li> <li>① ... (생략)</li> <li>② 사회성 발달검사: 사회성 발달 증진 5% 이상 향상</li> <li>③ ...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공통) ... (생략)</li> <li>(필수) 신체 발달 및 체력측정, <b>사회성 발달 측정</b></li> <li>① 기초신체검사, 기승평가검사: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5% 이상 향상</li> <li>② <b>사회성 발달검사 : 사회성 발달 증진 5%이상 향상 (삭제)</b></li> <li>③ ... (생략)</li> </ul>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인력 자격기준</li> <li>-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 놀이, 영유아발달 민간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인력 자격기준</li> <li>-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 놀이, 영유아발달, <b>RT 발달중재사</b> 민간자격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ul>

42

##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지투] 주요 변경사항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적용 대상: 적용시점 이후 선정된(신규/재판정) 이용자

서비스명	항목	기준	변경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비스 내용 (회당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li> <li>- 월4회(주1회/ 회당 60분) ... (생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li> <li>- 월4회(주1회/ <b>회당 50분</b>) ... (생략)</li> </ul>
정신건강도달케어 서비스	중복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제한</li> <li>- 성인심리지원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제한</li> <li>- 성인심리지원서비스, <b>전국민마음투자사업</b></li> </ul>
	제공인력 (슈퍼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인력 자격기준</li> <li>- “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li> <li>※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 건강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 지도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인력 자격기준</li> <li>- “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li> <li>※ 정신건강전문요원의 1명 이상 채용 또는 정신 건강전문요원에 의한 <b>반기별 1회 이상</b>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li> </ul>

43

##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지투] 주요 변경사항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적용 대상: 적용시점 이후 선정된(신규/재판정) 이용자

서비스명	항목	기준	변경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운동서비스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 본 서비스</td> <td>1. 맞춤형운동서비스 제공 : 개별 장애유형, 등급,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운동, 교정 및 재활 운동, 문재행동 개선, 체력증진 운동 등의 특수 체육실시 ※ 이용자 선택으로 1:1~1:30내 진행</td> <td>월8회 (주2회)</td> <td>60분</td> </tr> <tr> <td></td> <td>2. (생략)</td> <td></td> <td></td> </tr> <tr> <td></td> <td>3. (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맞춤형운동서비스 제공 : 개별 장애유형, 등급,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운동, 교정 및 재활 운동, 문재행동 개선, 체력증진 운동 등의 특수 체육실시 ※ 이용자 선택으로 1:1~1:30내 진행	월8회 (주2회)	60분		2. (생략)				3.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내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h>회당 시간</th> </tr> </thead> <tbody> <tr> <td>기 본 서비스</td> <td>1. 맞춤형운동서비스 제공 : (생략) ※ 이용자 선택으로 1:1~1:60내 진행 - 1:1 월 4회 (주1회) - 1:4 월 6회 (주 1회2회) - 1:6 월 8회 (주 2회)</td> <td>월4~8회 (주1~2회)</td> <td>60분</td> </tr> <tr> <td></td> <td>2. (생략)</td> <td></td> <td></td> </tr> <tr> <td></td> <td>3. (생략)</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맞춤형운동서비스 제공 : (생략) ※ 이용자 선택으로 1:1~1:60내 진행 - 1:1 월 4회 (주1회) - 1:4 월 6회 (주 1회2회) - 1:6 월 8회 (주 2회)	월4~8회 (주1~2회)	60분		2. (생략)				3. (생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맞춤형운동서비스 제공 : 개별 장애유형, 등급, 건강상태에 따른 심리운동, 교정 및 재활 운동, 문재행동 개선, 체력증진 운동 등의 특수 체육실시 ※ 이용자 선택으로 1:1~1:30내 진행	월8회 (주2회)	60분																																
	2. (생략)																																		
	3. (생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맞춤형운동서비스 제공 : (생략) ※ 이용자 선택으로 1:1~1:60내 진행 - 1:1 월 4회 (주1회) - 1:4 월 6회 (주 1회2회) - 1:6 월 8회 (주 2회)	월4~8회 (주1~2회)	60분																																
	2. (생략)																																		
	3. (생략)																																		
집단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단 규모: 제공인력 1인:3인 이하의 이용자 이용(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단 규모: 제공인력 <b>1인:6인</b> 이하의 이용자 이용(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li> </ul>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기준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4

##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일상돌봄] 주요 변경사항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적용 대상: 적용시점 이후 선정된(신규/재판정) 이용자

서비스명	항목	기존	변경
기본서비스	서비스 대상	▪ 연령: 가족돌봄 청년(13~39세)	▪ 연령: 가족돌봄 청년(9~39세)
기본서비스 (돌봄·가사 A형)	사업코드	800101	500101
	서비스 가격	월 648,000원	월 660,000원
기본서비스 (돌봄·가사 C형)	사업코드	800301	500301
	서비스 가격	월 1,296,000원	월 1,320,000원
기본서비스 (가사 B형)	서비스 종류	B-1형(12시간)	삭제
		B-2형(24시간)	B형
	사업코드	800201	500801

45

## ' 25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기준정보 개정 사항

### [일상돌봄] 주요 변경사항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적용 대상: 적용시점 이후 선정된(신규/재판정) 이용자

서비스명	항목	기존	변경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종류 및 가격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월 257,000원	▪ 식사관리형 ▪ 월 228,000원 (총 8회) ▪ 영양관리형 ▪ 월 260,000원 (총 8회+영양관리)
	사업코드	800401	▪ 식사관리형: 미정 ▪ 영양관리형: 500401
특화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사업코드	800501	500501
	서비스 가격	월 240,000원(시간당 1.5만원)	월 272,000원(시간당 1.7만원)
특화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코드	800601	50060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기준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연구 결과 공유

# 04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효과성 분석

### / (지투) 서비스별 이용자 효과성 분석 조사 목적 및 분석 개요

- (목적) 효과성 검증을 개별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과정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에서 **충북전체 차원으로 분석하여 서비스의 효과성 제공 및 이를 환류 할 방안 모색**
- (조사대상) 2023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 (조사내용) 2023년 서비스 이용자 효과성 검증 사전·사후조사 결과 기관별 의뢰
- (조사방법) 공문을 통한 시·군·구 협조 요청(엑셀 서식 등봉)
- (조사기간) 2024년 6월~8월
- (조사대상 서비스) 26개 서비스 중도자 제외 이용자 4,903명(필수 척도)
- (분석방법) 공통\_서비스 만족도, 필수 척도 사전·사후 평균 차이 분석 등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효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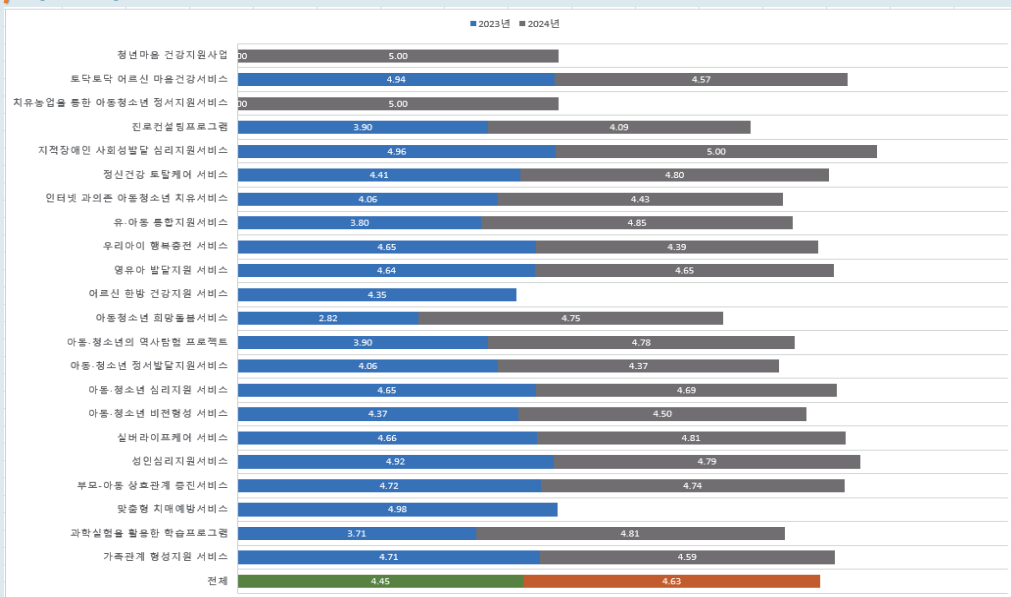
## / (지투) 서비스 만족도 분석 결과

- 전체 이용자 중 응답한 1,504명의 서비스 만족도 수준은 4.63점(5점 만점)
  - 전년(4.45점) 대비 0.18점 높은 수준
- 서비스 유형별 만족도 (응답 20개 서비스)
  - 높은 만족도(5.00점) : 치유농업을 통한 아동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 지적장애인 사회성 발달심리 지원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낮은 만족도(4.09점) : 진로컨설팅프로그램 → 다른 서비스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만족' 하는 수준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효과성 분석

## / (지투) 서비스 만족도 분석 결과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효과성 분석

### / (지투) 서비스별 필수척도 분석 결과

- 전체 이용자 중 응답자 3,857명
- '24년도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제시 기준 목표달성 여부 확인
  - 25개의 서비스 중 21개 서비스의 **변화비중이 높아 목표 달성(부분 달성 포함)한 것으로 나타남**
  -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노후준비도, 노인우울척도, 건강기능상태 등 '**20%이상 긍정적인 변화**'

### / (청년마음) 이용자 효과성 분석 조사 목적 및 분석 개요

- (목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들이 서비스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현황파악과 효과성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대상) 충청북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 (조사내용) ' 23년 9월~ ' 24년 5월 서비스 이용자 효과성 검증 사전·사후조사 결과 기관별 의뢰
- (조사방법) 공문을 통한 시·군·구 협조 요청(엑셀 서식 동봉)
- (조사기간) 2024년 6월~8월
- (분석방법) 이용자의 정서행동 변화(MMPI-2, K-BDI) 척도 사전·사후 평균 차이 등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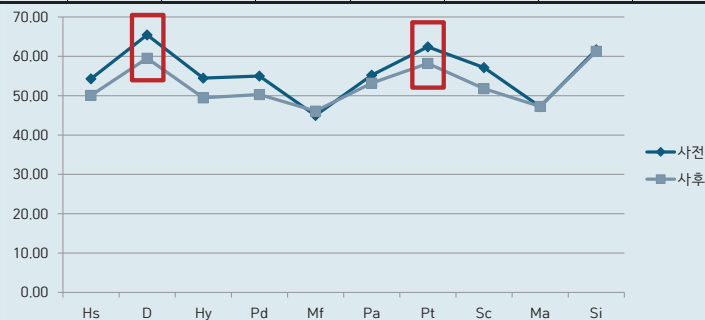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효과성 분석

### / (청년마음) 다면적 인성검사(MMPI-2) 전체 항목의 사전·사후 비교

- 사전 사후 비교 결과 임상척도인 우울과 강박성에서 개선된 수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

T점수	Hs (건강염려)	D (우울)	Hy (히스테리)	Pd (반사회성)	Mf (성역할)	Pa (편집중)	Pt (강박성)	Sc (조현병)	Ma (경조증)	Si (내향성)
사전	54.30	65.24	54.47	55.01	44.98	55.22	62.43	57.16	47.20	61.67
사후	50.07	59.50	49.47	50.28	46.09	53.18	58.18	51.77	47.28	61.28
변화점수	-4.22	-5.94	-5.00	-4.73	1.11	-2.03	-4.24	-5.39	.07	-.39



[그림] MMPI-2 전체 항목 사전·사후 평균 비교

52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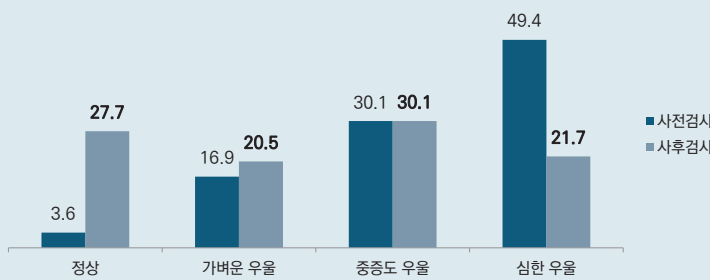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효과성 분석

### / (청년마음) 우울(K-BDI-II) 수준의 변화정도

〈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우울(K-BDI-II) 수준 변화 정도

(N=83)

구분	우울(K-BDI-II)			
	정상	가벼운 우울	중증도 우울	심한 우울
	명 (%)			
사전검사	3(3.6%)	14(16.9%)	25(30.1%)	41(49.4%)
사후검사	23(27.7%)	17(20.5%)	25(30.1%)	18(21.7%)
변화정도	+24.1%	+3.6%	-	-27.9%



[그림] 우울(K-BDI-II) 수준의 변화 정도

53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효과성 분석

### / (청년마음) 우울(K-BDI-II) 수준의 변화정도

- 우울은 사전 26.28점 → 사후 17.65점으로 8.63점이 감소,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확인
- 특히, 우울 수준 정도를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변화정도를 살펴본 결과
  - 정상(0-9점) 사전 3.6% → 사후 27.7% 크게 증가
  - 가벼운 우울(10-15점) 사전 16.9% → 사후 20.5% 증가
  - 반면, 중증도 우울(16-23점) 사전 30.1% → 30.1% 변화 없음
  - 심한 우울(24점 이상) 사전 49.4% → 사후 21.7% 감소
- 이러한 결과는 중증도 우울과 심한 우울에서 정상과 가벼운 우울로 개선되었거나 완화된 결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54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효과성 분석

### / 제언 및 향후 계획

- 일부 서비스의 효과성 검증 척도 및 성과목표의 수정이 요구되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준 조정(안) 제시
-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 필요성과 척도 활용 방법 등 교육을 통해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성과관리 강화
-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나 이용자 보호자에게 직접 조사 방법 변경 제시

55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조사 목적 및 분석 개요

- (목적) 서비스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환경 조성
- (조사대상)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자(' 23년 10~ ' 24년 7월)
- (표본 규모) 1,200명 (지투 1,068명, 청년 79명, 가사 13명, 일상돌봄 40명)
- (조사내용) 이용자의 기본 정보, 서비스 신청과정, 이용 과정, 서비스 품질/정책만족도, 기타의견
- (조사방법) 모바일 조사(전화조사 병행)
- (조사기간) 2024년 9월~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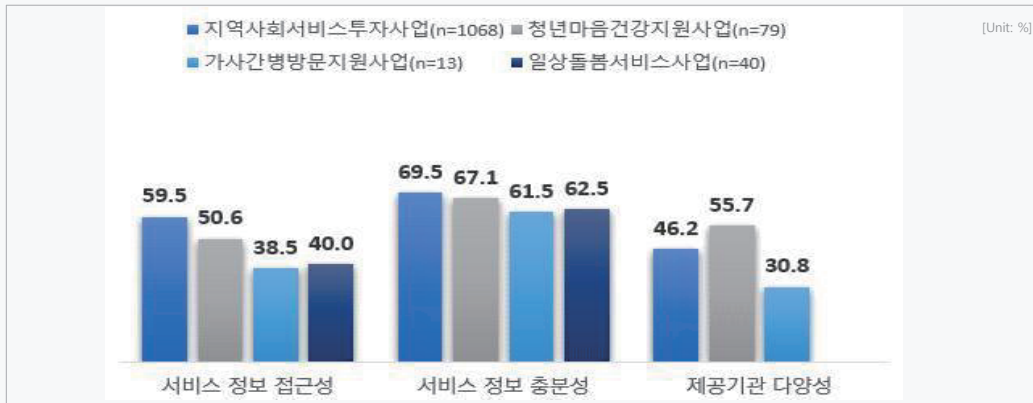
56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서비스 신청 과정에 대한 항목별 결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합산 비율



- (서비스 정보 접근성, 충분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서비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제공기관 다양성)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긍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지정제로 시행하고 있어서 기관 다양성 문항을 조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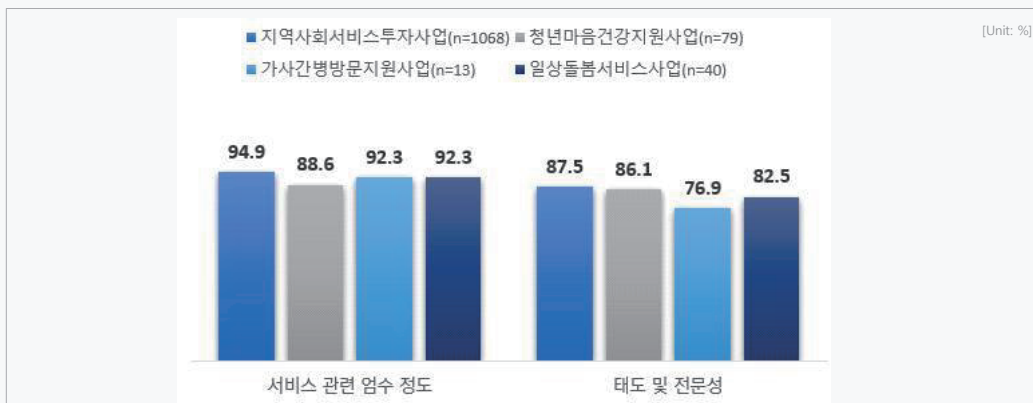
57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서비스 이용과정\_제공인력(제공자)에 대한 결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합산 비율



- 제공인력(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관련 업무 정도 및 태도와 전문성 항목 모두 80% 이상 (가사간병 제공자의 태도와 전문성 제외)의 높은 긍정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제공인력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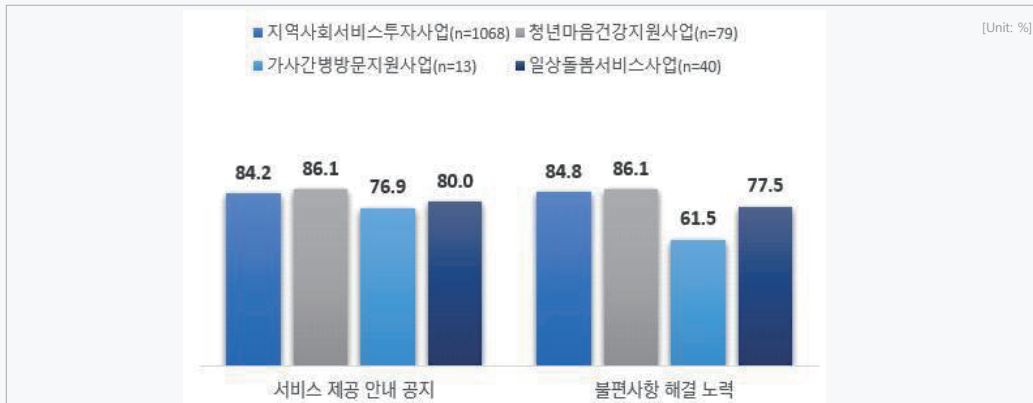
58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서비스 이용과정\_제공기관에 대한 결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합산 비율



-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안내 공지 및 불편사항 해결 노력 항목 모두 75% 이상(가사·간병 제외)의 높은 긍정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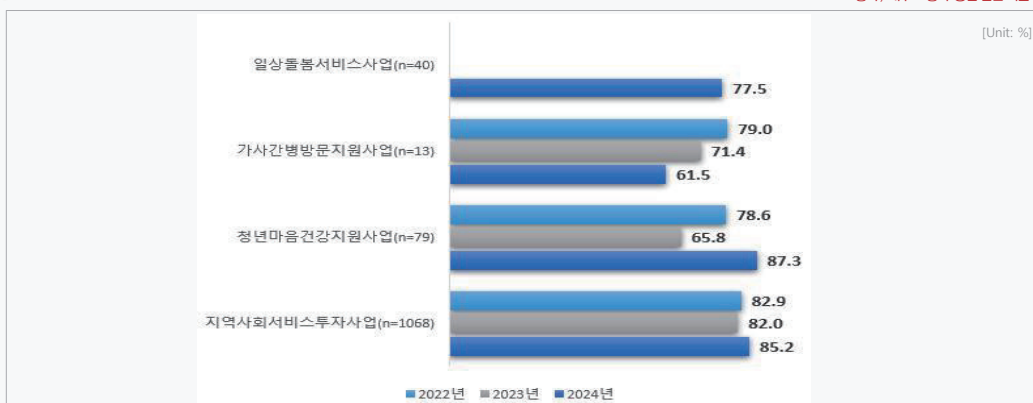
59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서비스 품질/정책 만족도\_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합산 비율



- 각 사업별로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 비율을 확인한 결과,  
-지역사회서비스(85.2%), 청년마음건강(87.3%), 가사간병방문(61.5%), 일상돌봄 서비스 (77.5%)로 1개 사업을 제외하고 70% 이상으로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60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서비스 만족도(2022년~2024년) 주요 지표 비교

구분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삶의 질 개선	지속적 필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22년	82.9	79.2	92.3
	2023년	82.0	78.2	90.9
	2024년	85.2	83.7	94.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2년	78.6	66.7	92.9
	2023년	65.8	68.4	88.2
	2024년	87.3	84.8	98.7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022년	79.0	81.5	95.1
	2023년	71.4	71.4	78.6
	2024년	61.5	76.9	92.3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024년	77.5	90.0	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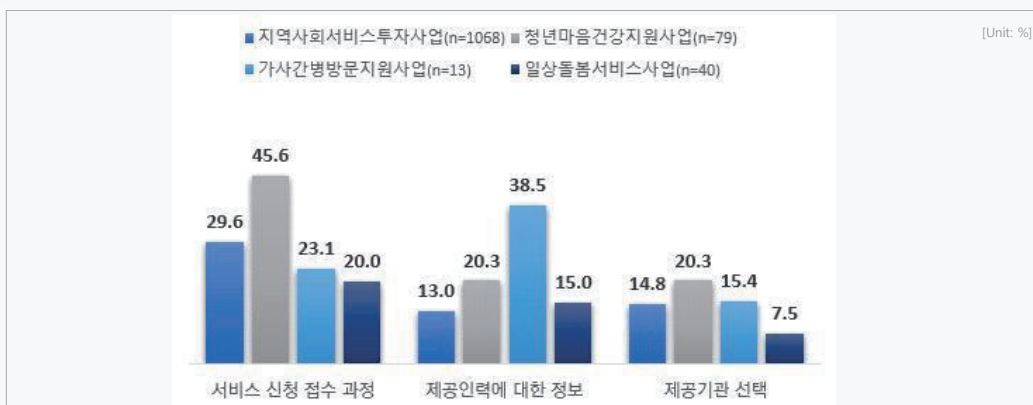
- 전년 대비 서비스 만족도 주요 지표는 (가사간병)의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지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높아짐

61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서비스 품질/정책 만족도\_이용 중 가장 힘들었던 점



- 서비스 이용 중 힘들었던 점으로 4개 사업 모두 '서비스 신청 접수 과정'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용자들은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특히, 가사간병)와 제공기관 선택(청년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62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서비스 품질/정책만족도\_서비스 이용 중 가장 힘들었던 점

[Unit: %]

구분	서비스 신청 접수 과정	제공기관 선택	제공 인력에 대한 정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22년	26.0	19.1
	2023년	31.5	17.1
	2024년	29.6	14.8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22년	28.6	28.6
	2023년	44.7	31.6
	2024년	45.6	20.3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2022년	-	-
	2023년	21.4	7.1
	2024년	23.1	15.4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024년	20.0	7.5

- (지투) 이용자는 최근 2년보다 서비스 이용 중 힘든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가사간병)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높은 비율(38.5%)을 나타내어 서비스 정보 제공 관련하여 지자체와 기관의 홍보 노력이 더욱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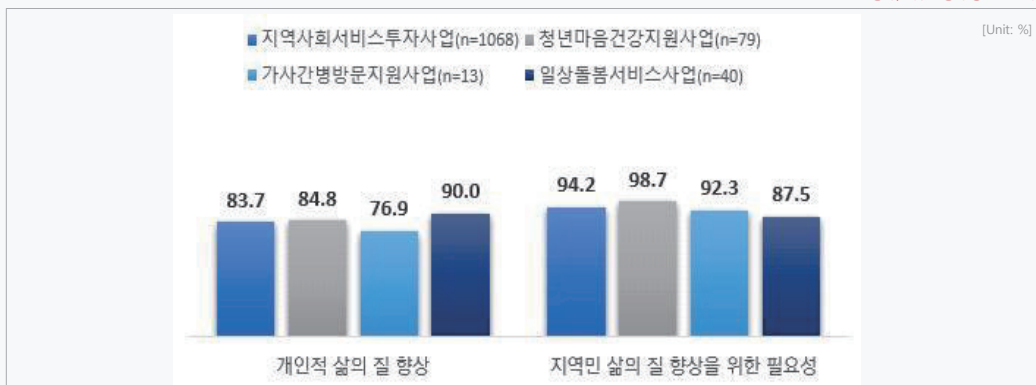
63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서비스 품질/정책 만족도\_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결과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합산 비율



- 4개 사업 모두 서비스 이용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가 계속 필요하다는 응답은 80% 이상으로 나타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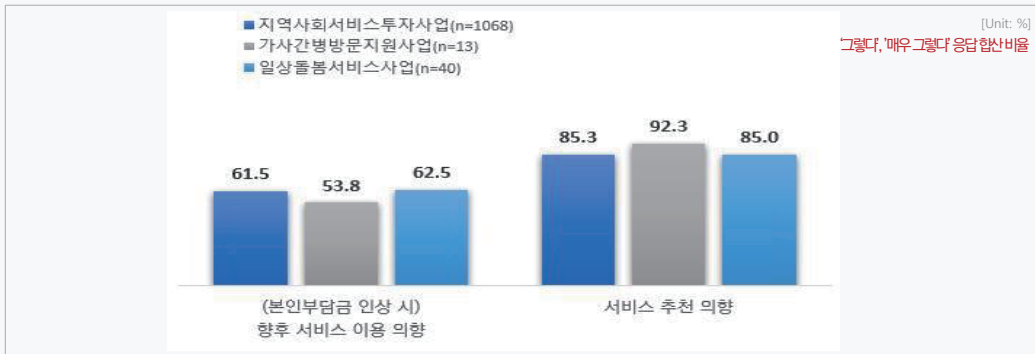
64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서비스 품질/정책 만족도\_향후 서비스 이용 및 추천 의향



- 4개 3개 사업 모두 본인부담금 인상 시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함
-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 비중은 3개 사업 모두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 이용한 서비스 만족으로 인하여 추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종료로 향후 서비스 이용과 추천 의향 문항은 조사하지 않음

65

## ' 24년 충북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조사 연구 결과 공유

(지역자율형)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

### / 애로사항, 건의 및 제안 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n=1,068)**  
 서비스 이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3.9%) > 제공기관이 다양했으면 한다(2.3%) >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2.0%) > ...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0.7%) 등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n=13)**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15.4%) > 희귀병 환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7.7%) > 이용 횟수를 늘려야 한다(7.7%) ... 없음(76.9%)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n=40)**  
 반찬을 가져오는 날짜가 늘었으면 한다(7.5%) >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5.0%) > 서비스 이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 홍보 확대 등(5.0%) ... 모름, 없음(58.0%)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n=76)**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양했으면 한다(5.1%) >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5.1%) >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5.1%) > 서비스 이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3.8%) 등

66

# '25년 연간 교육 추진계획 등 협조사항

# 05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추진 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p.144),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안내(p.103),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p.167)

- (원칙)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를 지원 또는 관리·감독함

### 목 적

-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자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중점 추진
- 2025년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과정에 따라 온·오프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교육 효과성 및 제공기관 참여 편의성 제고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인정되는 교육과정

-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 ※ 단, 사회서비스원 교육의 경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교육에 한해 인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
  - ※ 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기관 컨설팅의 경우 중앙사회서비스원 교부예산 활용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에 한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직무교육(4시간 이내)으로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 보수교육 신청 및 수강 홈페이지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홈페이지 <http://edu.kcpass.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 <http://edu.ssis.or.kr>
  -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cbcsi.or.kr>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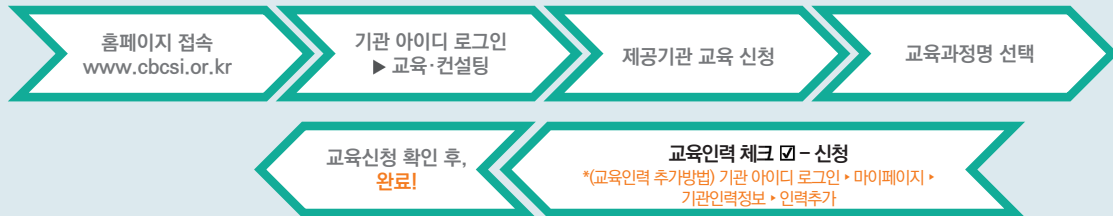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충북지원단 교육 신청 절차

- 교육 관리시스템 미등록자는 등록 후 접수 가능(교육 매뉴얼 \* 참조)

\* 교육·컨설팅 > 제공기관 교육 > 교육신청 > 제공기관 교육 매뉴얼 확인

■ 제공기관 교육 매뉴얼



### 교육 이수증 발급 절차

- 교육 이수 시간은 개인별로 부여되며 발급된 이수증은 출력 후 제공기관 교육 관리에 활용



70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충북지원단 교육 관리 방침

- 교육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 진행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참여 가능** ※ 당일·현장 접수 불가
- 교육과정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교육 진행
- 교육 신청 후 **무단 불참하면 다음 교육 신청 시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 모든 교육은 **80% 이상 참석 확인** 시 이수증 발급(부분 이수 불가)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수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
-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신청 인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 폐강** ※ 폐강 교육은 시작 전 공지하여 안내
- 시·군에서는 지역 내 제공기관 대상으로 교육 안내 및 참여 독려 → **현장조사 시 교육 이수시간 준수 여부 확인**
- **[필수 확인]** 2025년 대면 및 비대면 교육에 따른 사전 안내 사항

교육방식	사전 안내 사항
대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지된 계획에 따라 장소, 입교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참석 바람</li> <li>·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반드시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li> </ul>
비대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신청 후 '보안 서약서'를 개인별 필수 제출</li> <li>· 줌(zoom) 활용으로 입장 시 "성명(소속기관명)" 확인 후 접속 바람</li> <li>·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기실에서 입장 제한</li> <li>· 개인별 접속 후 화면(비디오)은 상시 켜 주시고 얼굴 공개 바람</li> </ul>

71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2025년 연간 교육 추진 계획(안)

#### ※ 공통교육과 직무교육의 차이

(공통 교육)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바우처 사업에 대한 기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  
(직무교육) 제공하는 대상과 분야별 기본 및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 연 14회

구분	과정명	시수	횟수	일정	교육방식
공통 교육	지침교육 및 사업설명회_중남부권, 북부권 *지투, 일상	2h	2회	3월	대면
	사업 운영 기본 교육_실무 서류 작성 *지투	3h	3회	5월, 9월, 11월	대면
	[협업] 전자바우처시스템(기초)	2h	2회	5.28(수), 9.17.(수) 10:00-12:00	비대면
	[협업] 전자바우처시스템(심화)	2h	2회	7.23(수), 11.21.(금) 10:00-12:00	비대면
	안전관리 예방_중남부권, 북부권	2h	2회	7월, 10월	대면
	소진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2h	2회	4월, 9월	대면
	제공기관 소통강화 워크숍	4h	1회	8.1.(금) 예정	대면

72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2025년 연간 교육 추진 계획(안)

####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 연 6회

구분	대상	과정명	시수	횟수	일정	교육방식
직무교육	전체 제공인력	검사도구 이해 및 분석 /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한 사례개념화	4h	1회	11월	대면
		이용자 성과관리 교육	2h	1회	5월	대면
		상담 심화 과정: 슈퍼비전(서비스별, 경력별)	4h	3회	7월, 10월 <sup>2회</sup>	대면
	기관장, 관리책임자	[협업]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2h	1회	9.19.(금) 10:00~12:00	대면

73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2025년 연간 교육 추진 계획(안)

####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교육: 연 1회

구분	과정명	시간	횟수	일정	교육방식
직무교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교육 (일상생활 위험관리 / 성희롱 예방·대처)	2h	1회	8월	대면

#### 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교육: 연 1회

구분	과정명	시간	횟수	일정	교육방식
공통교육	기본 교육_권역별 (사업정책 이해, 서비스 제공지침, 부정결제 예방 등)	3h	3회	4월 <sup>3회</sup>	대면
직무교육	●돌봄 대상자 의사소통 및 대응법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직무교육	3h	2회	6~8월	대면

74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2025년 연간 교육 추진 계획(안)

#### 5)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교육: 연 1회

구분	과정명	시간	횟수	일정	교육방식
직무교육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제공인력 교육	2h	1회	7월	대면

####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교육: 연 3회

구분	과정명	시간	횟수	일정	교육방식
직무 교육	[협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관리자 교육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2h	1회	6.20.(금) 10:00~12:00	대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건강관리사 교육 ●모유 수유, 아동학대 예방 ●[협업] 장애인 산모 인식 개선	3h	2회	8월, 11월	대면

75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2025년 연간 교육 추진 계획(안)

#### [월별 일정표]

사업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회	2회	1회	2회		2회	1회	3회	1회	2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6회			1회		1회		1회	2회	1회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회						1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5회		3회		1회		1회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회					1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3회				1회		1회			1회

#### [참고 사항]

1. 과정별 세부 내용은 매회 공지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연간계획은 예산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인정기관과의 협업 시 진행 시기와 시수, 회기는 변동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매회 교육계획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재무회계·세무 관리와 인사노무관리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충북형 품질관리제도 사후관리 컨설팅**을 활용해 주시고,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교육, 부정수급 예방 교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6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협조사항 > 지원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입력 및 현행화\_1

기본현황	
제공기관명	제공기관명 입력
대표자명	대표자명 입력
사업형태	교육서비스
구분	아동/청소년
전화번호	기관연락처 현행화
이메일주소	기관연락처 현행화
홈페이지	
주소(도로명)	주소 입력

77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협조사항 > 지원단 홈페이지 기관정보 입력 및 현행화\_2

사업별현황	
사업내용	<p><b>편원통합교육센터</b></p> <p><b>과목실업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b>                      과목 한 과목을 위해 과목 실업이 필요하다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목실업을 통해 모든 교과에 필요한 창의력, 탐구력, 응용력 배양과 본인의 직업 실업을 통한 자신감, 성취감, 나아가서는 과목적 소양과 인격적 소양의 배양이 바로 편원통합교육센터의 의지입니다.</p> <p><b>교육적 효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능동적인 개별실업을 통한 자연스러운 흥미유발 및 적극적인 태도 함양</li> <li>2. 과목실업을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li> <li>3. 과목적 사고를 통한 자율에대한 통합력 향상</li> <li>4. 생활속 과목 원리의 자연스러운 접근 및 활용</li> <li>5. 자기주도적 실험과정 설계능력 배양</li> <li>6. 다양한 실업실습을 통한 탐구력 및 응용력 배양</li> <li>7. 모둠학습을 통한 사회적 향상 및 존중과 배려 함양</li> <li>8. 토론·발표를 통한 자신감 향상 및 자연스러운 복습 효과</li> </ol> <p><b>이동·청소년 비전형성 프로그램</b>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적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p>
제공기관 사진	

» 기관정보 검색 페이지를 통해 기관 홍보  
 - 기본현황, 사업내용, 제공인력 정보, 제공기관 사진 업로드 가능

78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협조사항 > (시군) 이용자 모집 시 지원단 홈페이지 활용 안내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Chungcheongbuk-do Social Service Center

지원단소개 제도안내 **사업안내** 정보 참여 교육·컨설팅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사업안내

사회서비스 알기  
시군별서비스 이용자모집  
기관정보 검색  
시군 담당자연락처  
이용자 준수사항  
제공기관 준수사항

### 시군별서비스 이용자모집

제목+내용

총 126건의 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파일	글쓴이	등록일	조회
126	[청주시]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상 (2024년 1월 현재)...	[1]	청주시담당자	2024.01.23	382
125	[청주시]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공고(수시)...	[3]	청주시담당자	2024.01.23	66
124	(진천군) 2024년도 1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공고 안내...	[5]	황신재	2024.01.18	29

79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협조사항 > 충북지원단 홍보매체 활용 안내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jbBFxb](https://pf.kakao.com/_jbBFxb)



모바일용 홈페이지  
<https://cjwerefare3.imweb.me/>

### > 충북지원단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교육·행사(워크숍 등), 설문조사 등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관련 정보를 동의자에 한하여 안내 드립니다!

80



## 충북지원단 연간 교육계획 등 협조사항

### 충북지원단 소개

#### 개요

운영기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직 원 수: 5명(지원단장 포함)

#### 주요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연구 기획, 품질관리 및 네트워크, 교육·컨설팅, 홍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취약지 지원사업 / 산모·산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원

#### 연락처

홈페이지 [www.cbcsi.or.kr](http://www.cbcsi.or.kr)

-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jbBFxb](https://pf.kakao.com/_jbBFxb) > 검색창에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카카오톡 접속 → 검색창에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입력 → 채널 추가
- 전화 및 메일: 043-820-3651~3654 / [2012cssc@gmail.com](mailto:2012cssc@gmail.com)

81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06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1	기존, 신규 15p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b>청·중장년(19-64세)</b>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b>청년(13-39세)</b> 으로,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b>청·중장년(19-64세)</b>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b>청년(0-39세, 청소년 포함)</b> 으로,												
2	기존, 신규 15p	※ (연령기준) 출생년도 기준	※ (연령기준) <b>만 나이</b> 기준												
3	기존, 신규 16p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읍·면·동장 및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의 경우,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b>(단,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선정 불가)</b>												
4	기존, 신규 18p	- (가사만) B-1형(월 12시간), B-2형(월 24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 (가사만) B형(월 24시간) * 기본 서비스 이용 없이 특화서비스만 이용하는 D형 별도 ※ 기존 B-1형(12시간)은 신규 모집 중단, 기존 이용자는 재판정 시 B형으로 변경												
5	기존, 신규 20p	<table border="1"> <tr> <td>식사·영양 관리 서비스</td> <td>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td> <td>25.7 만원</td> <td>주 2회</td> </tr> </table>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 만원	주 2회	<table border="1"> <tr> <td>식사관리 서비스*</td> <td>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td> <td>22.8 만원</td> <td>8회</td> </tr> <tr> <td>영양관리 서비스</td> <td>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td> <td>26 만원</td> <td>8회 + 수시 영양관리</td> </tr> </table>	식사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22.8 만원	8회	영양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6 만원	8회 + 수시 영양관리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 만원	주 2회												
식사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22.8 만원	8회												
영양관리 서비스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6 만원	8회 + 수시 영양관리												

83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6	기존, 신규 20p	<table border="1"> <tr> <td>병원 동행 서비스</td> <td>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td> <td>24만원 (시간당 1.5만원)</td> <td>최대 16시간</td> </tr> </table>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table border="1"> <tr> <td>병원 동행 서비스</td> <td>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td> <td>27.2만원 (시간당 1.7만원)</td> <td>최대 16시간</td> </tr> </table>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7.2만원 (시간당 1.7만원)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7.2만원 (시간당 1.7만원)	최대 16시간																								
7	기존, 신규 22p	<p>◆ (참고)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p>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이동돌봄 주민센터</td> <td rowspan="2">[ ] 지역사회 서비스</td> <td>지원대상자</td> <td>김○○</td> <td>서비스명</td> <td>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36시간) 일상돌봄 심리 지원 서비스</td> </tr> <tr> <td>지원대상자</td> <td>이○○</td> <td>서비스명</td> <td>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1형(12시간)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일상돌봄 소셜 다이닝 서비스</td> </tr> </table>	이동돌봄 주민센터	[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김○○	서비스명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36시간) 일상돌봄 심리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	이○○	서비스명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1형(12시간)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일상돌봄 소셜 다이닝 서비스	<p>◆ (참고)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p> <table border="1"> <tr> <td rowspan="3">이동돌봄 주민센터</td> <td rowspan="3">[ ] 일상돌봄 서비스</td> <td>지원대상자</td> <td colspan="3">[ ]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 ] 가족돌봄청년 (1개 선택)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td> </tr> <tr> <td>서비스 유형</td> <td>서비스 유형 (중복체크 가능)</td> <td colspan="2">서비스명</td> </tr> <tr> <td>지원 유형</td> <td>[ V ] 기본서비스 [ V ] 특화서비스</td> <td>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동행 서비스</td> <td></td> </tr> </table> <p>* 기본서비스 유형별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1개(A형), 2개(B형), 선택 불가(C형) * 기본서비스 미이용 시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2개(D형)</p>	이동돌봄 주민센터	[ ]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	[ ]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 ] 가족돌봄청년 (1개 선택)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중복체크 가능)	서비스명		지원 유형	[ V ] 기본서비스 [ V ] 특화서비스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이동돌봄 주민센터	[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김○○	서비스명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A형(36시간) 일상돌봄 심리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	이○○	서비스명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1형(12시간) 일상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 일상돌봄 소셜 다이닝 서비스																						
이동돌봄 주민센터	[ ]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	[ ]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 ] 가족돌봄청년 (1개 선택)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중복체크 가능)	서비스명																							
		지원 유형	[ V ] 기본서비스 [ V ] 특화서비스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B형 일상돌봄 심리지원 서비스 일상돌봄 병원동행 서비스																							
8	기존, 신규 24p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오픈 예정(오픈 시 재안내)																								

84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9	기존, 신규 20p	<p>&lt;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gt;</p> <table border="1"> <tr> <td>신설</td> <td>신설</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td> </tr> <tr> <td>일상생활 수행 어려움</td> <td>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td> </tr> </table>	신설	신설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p>&lt;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경제활동 포함)'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gt;</p> <table border="1"> <tr> <td>학업</td> <td>재학증명서</td> </tr> <tr> <td>장애인</td> <td>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td> </tr> <tr> <td>일상생활 수행 어려움</td> <td>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td> </tr> </table>	학업	재학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신설	신설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중증질환, 희귀질환) 등록신청서 등														
학업	재학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10	기존 48p 신규 49p	<p>□서비스지원기간및이용자격</p> <p>○일상돌봄 서비스 지원기간: 6개월, 재판정 5회가능 - 단, 간병교육의 경우 3개월, 재판정 1회가능 (생략)</p> <p>- 총 이용가능 기간: 기본서비스 유형별(A형, B-1형, B-2형, C형)·특화서비스별 3년 (간병교육 등 제외) ※ 이용자 개인별 총 서비스 지원기간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제한가능</p>	<p>□서비스지원기간및이용자격</p> <p>○일상돌봄 서비스 지원기간: 6개월(단, 간병교육의 경우 3개월) (생략)</p> <p>○ 총 재판정 횟수: 기본서비스 유형별(A형, B형, C형)·특화서비스별 재판정 5회(단, 간병교육은 재판정 1회) ※ 이용자별 총 재판정 횟수는 지자체별 조정가능</p>												

85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11	신규 54p	(신설)	10.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처분 (생략)																																																																																																
12	기존 57p 신규 62p	<p>❶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 (재가 돌봄·가사서비스)</p> <table border="1"> <tr> <td>0.5시간</td> <td>1시간</td> <td>1.5시간</td> <td>2시간</td> <td>2.5시간</td> <td>3시간</td> <td>3.5시간</td> <td>4시간</td> </tr> <tr> <td>이용 불가</td> <td>24.0</td> <td>33.0</td> <td>41.0</td> <td>48.0</td> <td>54.0</td> <td>61.0</td> <td>67.0</td> </tr> <tr> <td></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4.5시간</td> <td>5시간</td> <td>5.5시간</td> <td>6시간</td> <td>6.5시간</td> <td>7시간</td> <td>7.5시간</td> <td>8시간</td> </tr> <tr> <td>75.0</td> <td>84.0</td> <td>91.0</td> <td>100.0</td> <td>108.0</td> <td>115.0</td> <td>121.0</td> <td>134.0</td> </tr> <tr> <td>00</td> <td>00</td> <td>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r> </table>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 불가	24.0	33.0	41.0	48.0	54.0	61.0	67.0		00	00	00	00	00	00	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	84.0	91.0	100.0	108.0	115.0	121.0	134.0	00	00	00	000	000	000	000	000	<p>❶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서비스)</p> <table border="1"> <tr> <td>0.5시간</td> <td>1시간</td> <td>1.5시간</td> <td>2시간</td> <td>2.5시간</td> <td>3시간</td> <td>3.5시간</td> <td>4시간</td> </tr> <tr> <td>이용 불가</td> <td>25.0</td> <td>33.0</td> <td>42.0</td> <td>49.0</td> <td>55.0</td> <td>62.0</td> <td>68.0</td> </tr> <tr> <td></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4.5시간</td> <td>5시간</td> <td>5.5시간</td> <td>6시간</td> <td>6.5시간</td> <td>7시간</td> <td>7.5시간</td> <td>8시간</td> </tr> <tr> <td>77.0</td> <td>85.0</td> <td>93.0</td> <td>101.0</td> <td>110.0</td> <td>117.0</td> <td>123.0</td> <td>136.0</td> </tr> <tr> <td>00</td> <td>00</td> <td>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d>000</td> </tr> </table>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 불가	25.0	33.0	42.0	49.0	55.0	62.0	68.0		00	00	00	00	00	00	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	85.0	93.0	101.0	110.0	117.0	123.0	136.0	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 불가	24.0	33.0	41.0	48.0	54.0	61.0	67.0																																																																																												
	00	00	00	00	00	00	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	84.0	91.0	100.0	108.0	115.0	121.0	134.0																																																																																												
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 불가	25.0	33.0	42.0	49.0	55.0	62.0	68.0																																																																																												
	00	00	00	00	00	00	00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7.0	85.0	93.0	101.0	110.0	117.0	123.0	136.0																																																																																												
00	00	00	000	000	000	000	000																																																																																												
13	기존 59p 신규 64p	<p>(원거리교통지원금 교부방법)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제공기관에 지급 (시·군·구 → 제공기관)</p>	<p>&lt;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원거리 교통지원금 &gt;</p> <p>■ 지원대상</p> <p>-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 (생략)</p>																																																																																																

86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14	기존 60p 신규 66p	<p>&lt; 제공인력 2인 파견에 관한 사항 ('24년 한경 시범 적용) &gt;</p> <p>① 개요</p> <p>●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b>정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2인 1조 파견 허용</b> (기본 서비스에 한함, '24년에 한해 시범 적용)</p> <p>(생략)</p>	<p>&lt;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지원) &gt;</p> <p>■ 개요</p> <p>- 기본서비스에 한정하여 제공인력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하여 <b>정부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여 2인 1조 서비스 제공 허용</b></p> <p>(생략)</p>
15	기존 57p 신규 62p	<p>■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서비스</p>	<p>&lt;71p&gt;</p> <p>■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서비스(①식사관리 서비스)</p> <p>&lt;72p&gt;</p> <p>■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서비스(②영양 관리 서비스)</p>

87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16	기존 66p 신규 72p	<p>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p> <p>일반식</p> <p>-1식 4찬 이상 -간식(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p>	<p>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p> <p>일반식</p> <p>- 회당 3식 이상, 1식 4찬 이상 - 회당 간식 포함(우유 및 유제품 혹은 과일 등)</p>
17	기존 68p 신규 76p	<p>■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p> <p>(신설)</p>	<p>■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p> <p>기타</p> <p>- 재가방문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군·구는 시·도 승인 이후 운영 가능 * 가족이 있는 시간대에 방문, 거주지 인근 공공장소 활용 등 안전관리 방안 필요 - 전국민마음부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p>
18	기존 72p 신규 80p	<p>□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청년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등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p>	<p>□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를 운영 중인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p>

88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19	기존 77p 신규 85p	(생략)	<p>&lt;본인부담금 수정&gt;</p> <p>○ (기본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160%) 20% → 25%</p> <p>○ (특화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 → 15%</p>			
20	기존 88p 신규 96p	<p>○카드 발급기관</p> <p>-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전북은행)</p>	<p>○카드 발급기관</p> <p>-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b>iM뱅크</b>,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전북은행)</p>			
21	기존 94p 신규 102p	<p>○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소멸</p> <p>-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도전환 시 (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p>	<p>○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소멸</p> <p>- <b>일상돌봄서비스</b> 연도전환 시(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p>			
22	기존 96p 신규 104p	<p>□ 바우처 사용중지 사유 및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신설)</p>	<p>□ 바우처 사용중지 사유 및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자격 정지</td> <td>관계 법령에 의거 바우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td> <td>자격 정지로 출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td> </tr> </table>	자격 정지	관계 법령에 의거 바우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	자격 정지로 출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 정지	관계 법령에 의거 바우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	자격 정지로 출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89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23	기존 97p 신규 105p	<p>□ 카드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발급신청 (생략)</p>	<p>□ 카드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발급신청 (생략)</p> <p>※ 추후 QR결제 도입 예정(별도 안내)</p>												
24	기존 98p 신규 106p	<p>6.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p> <p>○ 결제 원칙</p> <p>· 결제방법(전용단말기)</p> <p>- 결제단말기에 서비스코드 6자리 입력, 제공인력ID 8자리 입력 및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서비스 결제금액(정보지원금)을 입력</p> <p>·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단말기 결제방법</p> 	<p>6.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p> <p>○ 결제 원칙</p> <p>· 결제방법(전용단말기)</p> <p>- 결제단말기에 서비스코드 6자리 입력(특화서비스만 해당), <b>대상자 카드 접촉 및 제공인력ID 8자리 입력 후 서비스 결제 금액(정보지원금)을 입력</b></p> <p>·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단말기 결제방법</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일상 돌봄 선택</td> <td>서비스 코드 입력 (<b>특화서비스 는 해당</b>)</td> <td>대상자 카드 접촉</td> <td>제공 인력 결제ID 입력</td> <td>결제 유형 입력</td> <td>결제 금액 입력</td> </tr> <tr> <td>결제 단말 기</td> <td>6자리 입력</td> <td>결제 단말기 +바우처 카드</td> <td>8자리 입력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확인</td> <td>정상, 소급, 보강</td> <td>내음 통일</td> </tr> </table>	일상 돌봄 선택	서비스 코드 입력 ( <b>특화서비스 는 해당</b> )	대상자 카드 접촉	제공 인력 결제ID 입력	결제 유형 입력	결제 금액 입력	결제 단말 기	6자리 입력	결제 단말기 +바우처 카드	8자리 입력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확인	정상, 소급, 보강	내음 통일
일상 돌봄 선택	서비스 코드 입력 ( <b>특화서비스 는 해당</b> )	대상자 카드 접촉	제공 인력 결제ID 입력	결제 유형 입력	결제 금액 입력										
결제 단말 기	6자리 입력	결제 단말기 +바우처 카드	8자리 입력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확인	정상, 소급, 보강	내음 통일										

90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25	기존 99p 신규 107p	○ 결제 시기 - (원칙)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 결제 시기 - (원칙)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에 결제 가능 <b>하다,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가능</b>
26	기존 107p 신규 115p	2025년 지자체 일상돌봄 서비스 예산 구성 개요(시·군·구별) ● 사업비 1(바우처 금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약 ● 사업비 2(제공인력 2인파견·원거리교통비) : 시·군·구가 자체 지정한 제공기관에 교부	2025년 지자체 일상돌봄 서비스 예산 구성 개요(시·군·구별) ● 사업비 1(바우처 금액)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약 ● <b>사업비 2(제공인력 2인파견·원거리교통비) : 시·군·구가 자체 지정한 제공기관에 교부</b>
27	기존 109p 신규 117p	□ <b>비용의 예약</b> ○ 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동일계좌)에 예약 ※ 사업비 예약 시 예금주는 '지자체명+사업명' 으로 부여 (예: 서울 종로구지역, 충북충주시지역, 제주제주시지역 등)	□ <b>비용의 예약</b> ○ 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 <b>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동일계좌</b> )에 예약 ※ 사업비 예약 시 예금주는 '지자체명+사업명'으로 부여 (예: 서울종로구 <b>일상</b> , 충북충주시 <b>일상</b> , 제주제주시 <b>일상</b> 등)
28	기존 116p 신규 124p	□ <b>부당이득 정산</b> ○ 관련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 설)	□ <b>부당이득 정산</b> ○ 관련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b>부당이득금 가산 이자 징수</b> (생략)

91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29	기존 99p 신규 139p	④ 법인/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④ 법인/ <b>법인등기부등본</b> / - 임원전체작성
30	기존130p 신규 140p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 결정사유가 없는지 확인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법 제17조 제1~6호 사항에 대해 결정사유에 대해 서면조회 실시(단, 제7호의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확인 요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 결정사유가 없는지 확인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법 제17조 제1~6호 사항에 대해 결정사유에 대해 <b>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 실시</b> (단, 제7호의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확인 요청)
31	기존 143p 신규 151p	2.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 결제 단말기 신청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SKT: 1599-3813 / LGU+: 1899-0656	2.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 결제 단말기 신청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b>SKT: 1599-3813 / LGU+: 1899-0656</b>
32	기존 150p 신규 158p	1) 건강진단 주기 - 채용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에 한함	1) 건강진단 주기 - 채용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b>1년</b> 이내 판정된 것에 한함
33	기존 151p 신규 159p	2) 건강진단 항목 - 채용 시와 채용 후 매 1년마다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의 진단 항목에는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건강진단 항목 - 채용 시와 채용 후 매 1년마다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의 진단 항목에는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건강검진 기본 항목과 <b>마약검사</b> 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92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34	신규 159p	(신 설)	<b>제공인력 결격사유</b> (생략)
35	신규 162p	(신 설)	<b>제공인력 안전관리</b> (생략)
36	신규 165p	(신 설)	<b>제공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3조의2 / 지자체 담당자)</b> (생략)
37	기존 153p 신규 167p	(교육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교육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수료한 해에는 제공자 직무교육(4시간)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38	기존 153p 신규 167p	(이수시간) 연 11시간	(교육시간) 연 8시간 (공동 4시간+직무 4시간) ※ 단, 상반기에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신규제공인력의 경우 공동 교육 4시간 포함 12시간 교육 이수 필요

93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39	신규 177p	(신 설)	<b>법 위반사실의 공표</b> (생략)
40	기존 169p 신규 183p	② 기관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유도)	② 기관운영·관리: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
41	이용자선정 <b>다빈도 질의 6번</b>	6. 70세 이상 고령자와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돌봄 필요 청·중장년)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개연성이 크므로, 읍면동 및 시군구 판단 하에 <b>별도 돌봄자 부재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 연령으로 갈음</b> 할 수 있습니다.	6. 70세 이상 고령자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돌봄 필요 청·중장년)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개연성이 크므로, 읍면동 및 시군구 판단 하에 <b>별도 돌봄자 부재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연령으로 갈음</b> 할 수 있습니다.
42	제공기관 지정·등록 및 관리·운영 <b>다빈도 질의 7번</b>	□ 제공기관 지정·등록 및 관리·운영 관련 ○ Q2. 제공기관 등록 시 법인 임원 전부의 결격사유를 조회 (중략) ⇒ A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에 따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시범사업적 성격 및 신속한 제공기관 지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 임원 중 해당 제공기관 운영자 등 관련인의 결격사유만 우선 조회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b>'24.12월까지 한시 적용</b> ) 또한 (중략)	□ 제공기관 지정·등록 및 관리·운영 관련 ○ Q2. 제공기관 등록 시 법인 임원 전부의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되어있는데, 해당 법인의 임원 수가 많고,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모두 조회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 A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에 따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2는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한다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지침 수정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1.16.

연번	페이지	원안	수정안
43	제공기관 지침등록 및관리운영  다빈도 질의 10번	<p>Q10. 제공인력 2인 파견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공기관에서, 이용자 요청에 따라 제공인력 2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p> <p>A10. 가능합니다. 단, 이용자에 추가 정부지원금 지원은 없으며, 이용자의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인력 A와 B가 2시간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A가 2시간, B가 2시간 각각 결제</li> <li>- 단, 서비스 제공량을 모두 이용한 이후에도 본인부담 100%로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과 자체적 계약에 따름)</li> </ul> <p>* 정부지원을 받아 제공인력 2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인 파견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정을 받아야 함</p>	<p>Q10. 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월 바우처 한도 내에서 제공인력 2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p> <p>A10. <b>불가합니다.</b> 기본서비스 결제방식이 '25년부터 시작-종료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b>고난도 사례(제공인력 2인 파견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제공인력 2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b></p>

95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예외지급 처리방법 안내\_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2.13.

#### □ 예외지급 처리 대상

- 동일 제공인력이 동일 이용자에게 2시간 미만 간격\*으로 일상돌봄 **기본서비스(A, C형)**를 제공하는 경우  
\* 서비스 종료 후 다음 번 서비스 시작이 2시간 미만인 경우9중단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 □ 예외지급 처리 방법

- (기존 정상결제건 변경 사항) 중단 전 **서비스부터 현장에서 정상 결제하지 않고, 중단 전·후** 서비스 시간 합산하여 **1건으로 예외지급 청구**
- (기존 소급결제건 변경 사항) 소급 결제하려는 서비스의 전·후 2시간 이내 동일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결제 건을 과오 반납하고 전·후 서비스 시간 합산하여 1건으로 예외지급 청구**
- 예외지급 청구화면 및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에 청구사유는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합산 청구**' 로 기재

96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예외지급 처리방법 안내\_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2.13.

#### □ 결제 관련 주요 Q&A

Q1. 이용자 요청으로 예상치 못하게 2시간 이내에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선·후행 서비스 모두 예외지급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선행 서비스를 결제해버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동일인에게 2시간 이내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선·후행 서비스를 함께 예외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행 서비스를 결제하신 경우 결제 앱 및 단말기에서 직전거래 취소(당일거래 취소 및 과오반납도 가능)를** 하시기 바랍니다.

Q2. 이용자에게 한번 방문할 때 정상결제와 함께 예전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한 소급결제도 진행해야 하는데 2시간 결제 제한이 있으면 제공인력이 현장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A2. 적용 대상은 결제한 시간 기준이 아니고 실제 서비스 제공한 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정상결제 직후에 예전 서비스 제공 건에 대한 소급결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단, 소급결제 대상 서비스 전후 2시간 간격 이내 동일 대상자에 대한 동일 서비스 제공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게 적용)

97

## ' 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 예외지급 처리방법 안내\_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2025.2.13.

#### □ 결제 관련 주요 Q&A

Q3. 하루 중 여러 대상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일 대상자에게 여러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의사항이 해당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 대상자에 동일 제공인력이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Q4. 예외지급 승인 처리 이후 잘못 처리한 부분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4. 예외지급이 비용지급(매달 26일) 된 이후에는 과오반납이 불가하므로, 시·군·구 담당자께서 비용지급 이전(25일 18시 이전,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18시 이전)에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로 연락하여 승인 처리를 취소하고 다시 예외지급 청구 및 승인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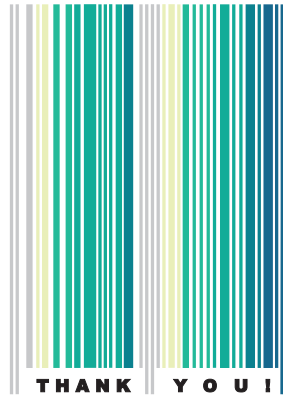
98

## 교육만족도 조사

' 2025년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침교육 및 사업설명회 만족도 조사  
아래 QR코드를 찍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9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파트너  
충북형 사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